

의안번호	제3026호
의결일	2025. . .
연월일	(제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제출자	고성군수
제출연월일	2025. 11. 14.

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3026호
--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1. 14.
제 출 자: 고 성 군 수

1. 폐지 이유

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(법률 제 20415호, 2024. 3. 26. 공포, 2026. 3. 27. 시행)에 따라 「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」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의

- 복지지원과(성별영향평가)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1598호

가) 예고기간: 2025. 10. 10. ~ 2025. 10. 30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- 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 -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작성자: 주민생활과장 정영랑

불임**관계법령(발췌)****□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**

(제정) 2021.11.10 조례 제2681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고성군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, 지역사회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지역사회 통합돌봄”(이하 “통합돌봄”이라 한다) 이란 고령·장애·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·의료, 요양·돌봄, 일상생활지원, 주거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

③ 군수는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군민의 참여 확산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·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통합돌봄 시행계획의 수립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통합돌봄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
2. 통합돌봄을 위한 분야별 사업 추진내용
3. 통합돌봄 제공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4. 통합돌봄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
5. 그 밖에 군수가 통합돌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통합돌봄 대상) ① “통합돌봄 대상자”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고령·장애·질병·사고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지역사회복귀를 희망하는 사람을 말한다.

② 그 밖에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통합돌봄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통합돌봄 사업추진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재가요양 및 돌봄 등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지원사업
2.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
3. 지역사회 거주를 위해 필요한 주거 정비 지원 사업
4. 인공지능 보조기기를 활용한 돌봄 및 생활편의 지원사업
5. 그 밖에 군수가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통합돌봄 안내창구 설치) ① 군수는 통합돌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내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통합돌봄 안내창구에서는 읍·면단위 통합돌봄사업 수행 및 주민의 참여를 통한 돌봄사업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통합돌봄추진단 설치) ①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추진단(이하 “추진단”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
-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자문한다.
1. 통합돌봄 계획의 수립·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
 2. 통합돌봄 제공기관 간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3. 그 밖에 추진단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반에 관한 사항

제9조(추진단의 구성) ① 추진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통합돌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해 되,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을 따른다.

1. 통합돌봄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통합돌봄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

3. 그 밖에 군수가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군수는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.

제10조(위원의 임기)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1조(위원의 해촉)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사망,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

3. 업무와 관련된 비밀 누설하거나 사적이익에 이용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4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

인정되는 경우

제12조(회의 등) ① 추진단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 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추단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추진단 회의에 필요한 경우 통합돌봄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3조(회의록의 비치) 군수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 다만,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4조(간사) ①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통합돌봄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.

제15조(민간의 참여) 군수는 읍·면 또는 마을 단위 특색에 맞는 통합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<2021.11.10. 조 2681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